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7723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요	4
2. 주요내용	8
3. 예상효과	18
4. 종합의견	20
※ 참고자료	23
1. 법제처 심사결과	24
2. 상품양허 세부내용	27
3.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영향평가 결과	29
4. 한-과테말라 교역 투자 현황	30

I. 제안 및 회부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5년 1월 22일
3.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의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2021.3.1. 전체 발효)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외에 과테말라 공화국(이하 “과테말라”)과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수준 확대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의정서를 통해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에 가입하며, 동 FTA 당사자에 과테말라를 포함하는 등 한-중미 FTA 협정문(이하 “협정문”) 전반에서 과테말라에 적용하는 사항을 추가(안 제1조-

제18조)

- 나. 협정문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의 부속서 2-나 “관세철폐”에 동 의정서의 부속서 1의 한국과 과테말라의 양허표를 추가(안 제4조 및 부속서 1)
- 다. 협정문 제8장 “정부조달”의 부속서 8-가 “적용범위”에 동 의정서의 부속서 2의 과테말라의 양허 적용범위 추가(안 제9조 및 부속서 2)
- 라. 협정문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간 서비스”, 제11장 “금융 서비스”의 관련 부속서에 동 의정서 부속서 3의 과테말라의 서비스·투자 유보목록 추가(안 제19조 및 부속서 3)
- 마. 그 밖에 의정서의 부속서 및 각주가 한-중미 FTA 협정문의 일부를 구성, 동 의정서 발효일 등을 규정(안 제20조-제24조)

3. 참고사항

- 가. 영향평가결과 :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
-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
- 다. 국내산업 보완대책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별첨 국내보완대책 미수립 결과보고 참고
- 라. 입법조치 : 별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참고
- 마. 협정 체결경위

- 2021. 9. 협상 개시
- 2023. 9. 5. 협상 타결
- 2023. 12. 26. 국무회의 의결
- 2024. 1. 8. 서명(과테말라시티)

Ⅲ. 검토의견

1. 개요

정부가 제출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이하 “비준동의안”이라 함)은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외에 과테말라 공화국(이하 “과테말라”)과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수준 확대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¹⁾에 따라 그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음.

가. 추진 경과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라 함)은 2015년 6월,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 협상이 시작되어 2016년 11월 타결됨.

그러나,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참여하였던 과테말라는 일부 쟁점²⁾

1)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인 섬유, 자동차부품에 대한 개방 불가와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주장함.

에서 한국과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2017년 3월 가서명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체결되었음.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2018년 2월 정식 서명을 마친 후 2019년 8월 국회에서 한-중미 FTA 협정이 비준³⁾되었고, 2021년 3월 1일 전체 발효됨.

과테말라는 2021년 3월 한-중미 FTA 전체발효를 계기로 동 FTA 가입의사를 공식 표명함. 한-중미 FTA 정식 발효 후 과테말라의 재참여를 위해 한국과 과테말라는 추가로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한바,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상품양허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중미 5개국과 과테말라측 가입조건에 대한 동의확보를 추진하였고 2023년 8월 양국 간 쟁점타결에 최종 합의함.

한국과 과테말라는 2015년 6월 최초 협상 개시 이후 8년 만인 2023년 9월 5일 가입협상 타결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1월 8일 과테말라 시티에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이하 “가입의정서”라 함)에 대한 정식 서명을 거쳐 2025년 1월 22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위해 제출되었음.

3) 국가별로 보면, 한국(2019.8.2.)에 이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2019.10.1.), 코스타리카(2019.11.1.), 엘살바도르(2020.1.1.), 파나마(2021.3.1.) 순으로 비준됨.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진 경과 >

- (2010.06.)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담 시 한-중미 FTA 의제 논의
- (2015.06.18.) 한-중미 FTA 협상 개시 선언
- (2015.09.~2016.10., 총 9차례) 한-중미 FTA 협상 진행
- (2016.11.16.) 한-중미 6개국, FTA 협상 실질 타결 발표
- (2017.03.10.) 한-중미 5개국(과테말라 불참)간 가서명 완료
- (2018.02.21.) 한-중미 FTA 정식 서명
- (2019.08.02.) 한-중미 FTA 한국 국회 비준
- (2021.03.01.) 한-중미 FTA 전체 발효
- * 온두라스·니카라과(2019.10.01.), 코스타리카(2019.11.01.), 엘살바도르(2020.01.01.), 파나마(2021.03.01.)
- (2021.03.) 과테말라 가입의사 공식 표명
- (2021.09.~2023.07.) 협상 진행
- (2023.08.) 쟁점 합의
- (2023.09.05.) 가입협상 타결 발표
- (2024.01.08.) 가입의정서 정식 서명

나. 국회의 비준 동의 사유

동 가입의정서는 한-중미 FTA 제1.5조의 적용범위 및 제1.6조의 당사국들 정의에 각각 과테말라를 추가하고, 한-중미 FTA 부속서 2-나 관세 철폐에 동 가입의정서의 부속서 1 한국 양허표와 과테말라 양허표를 제6절: 한국-과테말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한-중미 FTA가

과테말라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한-중미 FTA 제2.4조제2항은 해당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국내법인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제2항은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때에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따라서, 동 가입의정서로 인한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관세 철폐에 관한 내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에 대한 특례라고 할 것임.

이와 같이 동 가입의정서는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관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함.⁵⁾

4)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참고자료 1] 법제처 검토결과 참조

2. 주요내용

동 가입의정서는 과테말라를 한-중미 FTA의 당사자로 추가하려는 것인바, 양국이 추가로 유보하는 사항 외에는 기본적으로 한-중미 FTA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한-중미 FTA의 구성 및 주요 내용

한-중미 FTA는 총 24개의 장과 3개의 부속서(ANNEX)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중미 FTA의 구성 >

구분	챕터	챕터 명칭	주요 내용
총괄	서문	서문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 및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등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목적 확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여타 협정과의 관계 및 협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
상품	제2장	상품 무역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상대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규정
		- 내국민대우 예외 - 관세양허 부속서 - 수출 관세 부속서	- 각 당사국별 특정 조치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 예외 인정 - 관세 철폐 및 감축 계획 규정 - 각 당사국별 특정 수출 관련 조세에 대해 유지 인정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특혜원산지 기준 일반원칙 및 원산지 증명, 검증 방식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원산지증명서	-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원산지판정기준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 한-중미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양식 및 지침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협력 강화 규정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동식물 위생 보호 및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

구분	챕터	챕터 명칭	주요 내용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무역제한 효과 최소화 관련 조치 규정
	제7장	무역구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상계 관세 관련 규정
서비스·투자	제9장	투자	양국간 투자 관련 당사국 조치에 대한 의무 및 예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해결절차(ISD)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양국간 서비스무역 관련 당사국 조치에 대한 의무 및 예외
	제11장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및 공정한 시장환경을 위한 관련 규정
	제12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양국간 허용되는 일시입국 대상자 및 입국허용 기준
	제13장	통신	공중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장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규범	제8장	정부조달	양국간 정부조달시장 상호 개방
	제15장	지식재산권	상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 집행 등
	제16장	노동	노동 관련 국제 기준 준수
	제17장	환경	환경 관련 국제 기준 준수
	제19장	협력	연구, 과학, 기술, 교육 등 협력활동 규정
	제20장	경쟁	경쟁법 집행 관련 경쟁당국간 협력 및 국경 간 소비자보호
기타	제18장	투명성	양국의 행정절차 및 행정조치의 투명성 강화
	제21장	제도규정	공동위원회, 작업반 및 협의회
	제22장	분쟁해결	양국간 협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패널 등의 절차 규정
	제23장	예외	일반적 예외, 안보 예외 및 조세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협정 발효, 개정 및 종료
부속서	I	서비스·투자 현재 유보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기재한 목록
	II	서비스·투자 미래 유보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기재한 목록
	III	금융서비스 관련 유보	금융서비스 관련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등 예외목록

한-중미 FTA의 상품에 관한 협정문은 상품 무역(제2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3장),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제4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제6장), 무역구제(제7장) 등으로 구성됨.

이 중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인 제2장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의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standstill 조항),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금지 등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한-중미 당사국 간에 적용될 규범을 규정한 협정문과 양허유형에 따른 관세 철폐일정을 표시한 양허표⁶⁾로 구분됨.⁷⁾

한편, 한-중미 FTA의 서비스·투자에 관한 협정문⁸⁾은 한-미 FTA의 사례와 같이 양국이 개방하지 않기로 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을 개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포지티브(Positive) 방식’ 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을 지향하고 있음.

6)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란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함.

7) 한-중미 FTA의 상품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측은 품목수 기준으로 95.5~95.9%, 수입액 기준으로 98.7~100.0%를 16~19년 내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고, 중미 측은 품목수 기준으로 95.1~95.9%, 수입액 기준으로 93.2~99.3%를 16~19년 내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여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였음.

<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8) 서비스 챕터에서는 양국 서비스 자유화 확대를 위하여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금지, 현지주재 의무부과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투자 챕터에서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용 시 정당한 보상, 자유로운 송금 보장, 투자 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요건 부과 금지 등을 주요 의무로 도입하였음.

나. 과테말라 가입의정서의 주요 내용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동 가입의정서는 본문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가입의정서의 구성 >

본문	내용
제1조	○의정서를 통해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에 가입함을 선언
제2조~제19조	○과테말라의 가입으로 인한 한-중미 FTA 변경사항 규정
제20조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21.9.) 결정 3개*를 의정서의 발효 일에 과테말라에 대해서도 발효시키는 규정 *(결정1) 공동위원회 절차 규칙 (결정2) 위원회 및 작업반에 대한 작업 계획 (결정3)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절차
제21조~제24조	○의정서는 모든 당사국이 국내절차 완료 후, 30일째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제21조) ○한국어본, 영어본,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을 기준으로 해결(제22조) ○의정서와 그 부속서, 각주는 FTA의 불가분의 일부 구성(제23조) ○의정서에 일방적 유보 또는 일방적 해석선언 금지(제24조)
부속서	내용
부속서 1	○한-과테말라 간 상품양허표
부속서 2	○과테말라 정부조달 양허 범위 규정
부속서 3	○과테말라 서비스·투자 양허 범위 규정

가입의정서 본문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에 가입 선언 규정(제1조), 과테말라의 가입으로 인한 한-중미 FTA 변경사항 규정(제2조~제19조),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⁹⁾(’21.09) 결정 3개를 의정서의 발효일에 과테말라에 대해서도 발효시키는 규정(제20조), 발효시기 규정(제21조)¹⁰⁾, 기타 규정(제22조~제24조) 등 24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가입의정서 부속서는 한-과테말라 간 상품양허표(부속서 1), 과테말라 정부조달 양허 범위 규정(부속서 2), 과테말라 서비스·투자 양허 범위 규정(부속서 3)으로 구성됨.

1) 상품양허

과테말라는 한국에 대하여 자동차부품·섬유·철강 등 전체 품목 중 95.7%(6,6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바, 구체적으로는 對과테말라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동차부품(기준관세 5~20%) 및 철강, 전자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편직물(기준관세 10%), 순면사(기준관세 5%) 등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9)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 감독, 협정의 적용 결과 평가, 당사국 간 무역 관계 증진방안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함.

10) 가입의정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각국의 법적 요건 및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통보를 교환한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함.

< 과테말라의 對한국 관세철폐 주요 품목 >

양허 단계	주요 품목 (기준 관세율, %)
즉시 철폐	자동차부품(10), 타이어(5~15), 편직물(5,10), 순면사(5), 기타직물(10), 기타섬유제품(10~15) 등
단계철폐 (3년)	타이어튜브(5), 가죽벨트(15), 해바라기씨유(5), 낙화생유(5) 등
단계철폐 (5~10년)	섬유사(5), 기타정밀화학(5), 면사(5), 전선(5), 음향기기(15), 잉크(10), 기타고무제품(5), 화장품(15), 자전거부품(5~10), 무기류(10) 등
단계철폐 (12~19년)	합성가방(15), 아연도강판(15), 의약품(5), 신발(15), 노트북(15), 냉방기(15) 등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에 대하여 커피·바나나·의류 등을 포함 전체 품목 중 95.3%(11,67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바, 과테말라에서 수입되는 커피(기준관세 2~8%), 의류(기준관세 13%), 편직물(기준관세 10%) 등에 대한 관세를 협정문이 발효되는 즉시 철폐하고, 바나나(기준관세 30%), 레몬(기준관세 30%) 등 일부 과실류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냉동채소(기준관세 27%)는 7~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한국의 對과테말라 관세철폐 주요 품목 >

양허 단계	주요 품목 (기준 관세율, %)
즉시 철폐	커피(볶은 것 8, 볶지 않은 것 2), 의류(13), 면사(8), 편직물(10), 사탕수수당(3) 등
단계철폐 (3년)	티셔츠(13), 의류 벨트(13), 면사(8) 등
단계철폐 (5~10년)	바나나(30), 조주정(8), 신발(13), 냉동채소(27), 사탕무당(3), 계(20), 냉동채소(27), 목재식탁용품(8), 마태차(25) 등
단계철폐 (12~19년)	혼합주스(50), 파스타(5), 계피(8), 포도주(15), 잎담배(2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25), 상추(45), 토마토(45), 소스(45), 견과류(45), 만다린(144) 등

상품양허에 관한 개방수준을 현재의 한-중미 FTA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95.3%)는 중미 5개국의 평균(95.6%)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과테말라(95.7%)는 중미 5개국의 평균(95.4%)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한-중미 FTA 국가별 상품양허 비교 >

중미측 對한국 관세철폐	품목수	엘살바도르 95.1%	코스타리카 95.2%	파나마 95.3%	온두라스 95.6%	과테말라 95.7%	니카라과 95.9%
	수입액	온두라스 93.2%	코스타리카 98.0%	엘살바도르 98.1%	과테말라 98.5%	니카라과 99.1%	파나마 99.3%
우리측 對중미 관세철폐	품목수	과테말라 95.3%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95.5%		파나마, 코스타리카 95.6%		니카라과 95.9%
	수입액	온두라스 98.7%	파나마 99.5%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100%			

2) 원산지 규범

한-중미 FTA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두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General Rules)’과 특정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됨.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품목에 대한 품목별 기준(PSR)을 규정하바,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게 되며, 한-중미

FTA 상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은 ① 당사국에서 완전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 ② 당사국에서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③ 당사국에서 완전획득하거나 생산되지 않았으나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등 세 가지 원칙으로 규정됨.

동 가입의정서는 과테말라의 경우에도 한-중미 FTA 협정문 상의 원산지 규범 및 원산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미 진출 및 수출 시 적용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한-중미 FTA에 규정된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있어서도 동 가입의정서에 따른 PSR 기준 자체의 변경은 없으며, 한-중미 FTA 당사국 중 엘살바도르에 적용되어 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닌, 기존의 나머지 4개 당사국 즉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에 적용되어 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과테말라에도 적용되고 있음.

< 주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 >

업종	주요 내용
섬유·의류	대부분 원사기준으로 설정하되,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 중미 4개국(파나마,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과 같이 역외산 원사 및 원단 사용 허용 ↔ 엘살바도르는 완성의류에 대해서도 원사기준 적용
전기·전자, 기계	세탁기, 냉장고 등 우리 핵심 관심품목 중심으로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¹¹⁾ 혹은 부가가치기준(40%) ¹²⁾ 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자동차	완성차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차축 등)은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 편의 제고

11)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 Rules: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란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 원료의 세번(HS 코드)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 HS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

3) 투자

동 가입의정서에 따라 한-중미 FTA 협정문 투자의 장(제9장)에서 변경된 부분은 제9.30조(양자 투자 조약의 종료), 부속서 9-나(공공목적), 부속서 9-라(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임.

이 중 제9.30조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한-중미 FTA 협정문 제9.30조 제1항은 양자 투자 조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으로 한-중미 FTA의 발효일에 양자 투자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데 당사국이 합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가호’부터 ‘마호’까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가 우리나라와 체결 및 발효한 양자간 투자협정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동 가입의정서는 해당 조항에 ‘바호’를 추가하면서 우리나라와 과테말라 간 체결된 양자 투자 조약인 “2000년 8월 1일 과테말라에서 서명되고 2002년 8월 17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하 “한-과테말라 BIT¹²⁾”라 함)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BIT 협정을 FTA 협정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한-중미 FTA 투자의 장에 규정된 주요 내용은 2002년 발효된 기존

되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HS 2단위 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이고, 4단위 변경기준(CTH), 6단위 변경기준(CTSH) 순으로 완화된 기준임

※HS: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

12) 부가가치기준이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예: 40%)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

13)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의 한-과테말라 BIT에 비해 사전투자자 보호¹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강화¹⁵⁾,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규정의 정교화 등 최근 투자협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강화된 투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물 개발, 석유 개발, 건설 등을 위한 우리 기업의 과테말라에 대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정부조달¹⁶⁾

동 가입의정서에 따라 부속서 2(과테말라 정부조달 양허 범위 규정)가 한-중미 FTA의 부속서 8-가(ANNEX 8-A)에 추가될 경우, 과테말라의 가입으로 인한 한-중미 FTA 정부조달 챕터 상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은 없으며, 한-중미 FTA 정부조달 챕터에 명시된 정부조달 원칙 및 절차 등이 한-과테말라 간 정부조달 부문에 적용되게 됨.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양허안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한-중미 FTA 상 정부조달 부문의 양허 범위 및 수준이 과테말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 가입의정서 조달 양허안에 따라 WTO 미가입국인 과테말라의 정부조달 시장이 새롭게 개방됨.

참고로 한-중미 FTA 정부조달 챕터는 조달 운영과 절차에 대한 일

14) 한-중미 FTA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사전투자자'도 보호하는데, 해당 내용은 한-과테말라 BIT에는 없던 내용임.

15) 한-중미 FTA는 투자의 설립뿐만 아니라 투자의 확장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반면, 한-과테말라 BIT는 투자의 설립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확장은 규정하지 않음.

16)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를 말함.

반적 원칙 이외에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의 사용, ▲대응구매(offset)¹⁷⁾ 금지, ▲조달 참가 또는 계약 낙찰 조건으로 당사국 내 낙찰 실적 요구 금지, ▲중소기업 보호 조항 등 국가 간 경쟁사항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예상효과

과테말라는 한국의 78위 수출 대상국이자 87위 수입 대상국(2023년 기준)으로서 중미·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1,800만 명)하고 있고, 2024년 기준 과테말라로의 수출은 약 2억 8,700만 달러, 과테말라로부터의 수입은 약 1억 3,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 5,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최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음.¹⁸⁾

< 한국-과테말라 교역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 출	221.8	203.3	383.9	322.8	329	287
수 입	63.8	78	138.3	131.4	131	131
총교역액	285.6	281.3	522.2	454.2	460	418

※ 자료: 한국무역협회

17) 대응구매(offset)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함.

18) [참고자료 4] 한-과테말라 교역 투자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실시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영향평가” 결과(2024년 1월)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의 측면(실질 GDP의 추가적인 증가로 측정)과 소비의 측면(소비자 후생수준의 변화로 측정)에서 살펴볼 경우, 동 가입의정서의 발효 후 5년, 10년, 15년, 20년 모두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약 0.02% 추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한-과테말라 FTA로 인해 발효 후 5년에 걸쳐서 약 1.87억 달러, 발효 후 10년에는 1.90억 달러, 발효 후 15년에는 약 1.91억 달러, 발효 후 20년에는 1.91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또한, 세수 효과 측면에서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에 따라 과테말라에 적용되던 관세율이 인하 또는 철폐되면서 관세수입은 연평균 약 42.2억원 감소하는 반면, 과테말라와의 교역 증가 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경제성장(GDP 증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입 증가는 연평균 약 526.6억원(0.05조원)으로 추정됨.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규모(350~400조원)를 고려할 때, 세수 변화¹⁹⁾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됨.

한편,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에 따른 산업별 효과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600만 달러, 수입은 연평균

19)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발효 후 관세수입 감소(42.2억원)와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증가(526.6억원)를 종합해 보면, 연평균 약 484.4억원(0.05조 원)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

40만 달러로 순수출은 연평균 약 560만 달러로 예상되고, 순수출 창출 효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연관분석 결과에서는 제조업(연평균 105억원) 및 서비스업(연평균 36억원)의 생산 증가로 인해 연평균 14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의 경우에는 바나나, 냉동과일 등 수입 증가에 따른 과일 생산액 감소로 농업생산량 연평균 3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수산업의 경우 對과테말라 수산물 수입실적²⁰⁾이 미미하여 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인 어묵, 굴, 전복 등의 수출 증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한-과테말라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농축산분야의 경우 對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입 비중, 피해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 보완대책 수립보다는 기존의 FTA 대응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수산업 분야의 경우 수산물 수입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국내 보완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예정임.

4. 종합의견

동 가입의정서는 기존에 체결한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과의 한-중미 FTA에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과테말라를 자유무역협정 당

20) '20~'22년 對과테말라 수산물 수입이 없어 수입 영향 추정이 불가하며, 지난 10년간('13~'22년) 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수입이 미미(100불 이하)한 상황임.

사국으로 추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한-중미 FTA 기본 규범을 유지하면서 한-과테말라 간 시장개방에 관한 합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과테말라의 가입에 따라 한-중미 FTA는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지역 진출의 본격적인 확대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가입의정서에 대한 비준 동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263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법제처 심사결과

【참고자료 2】 상품양허 세부내용

【참고자료 3】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영향평가 결과

【참고자료 4】 한-과테말라 교역 투자 현황

【참고자료 1】 법제처 심사결과

1. 주요 내용

- 이 의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중미 5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외에 과테말라와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수준 확대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데,
 - 이 의정서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이 의정서안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라 함) 제1.5조의 적용범위 및 제1.6조의 당사국들 정의에 각각 “과테말라 공화국”(이하 “과테말라”라 함)을 추가하고,
 - 한-중미 FTA 부속서 2-나 관세 철폐에 이 의정서의 부속서 1 한국 양허표와 과테말라 양허표를 제6절: 한국-과테말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한-중미 FTA가 과테말라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한-중미 FTA 제2.4조제2항에서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관련한 국내법인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서는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때에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의정서안으로 인한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관세 철폐에 관한 내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관세법」에 대한 특례라고 할 것임.

의정서안 및 한-중미 FTA	관계 법령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1. 과테말라는 이 의정서를 통하여 협정 제24.4조에서 규정된 대로 과테말라와 공동위원회 간 합의된 조건에 따라 협정에 가입한다. 2. (생략) 3.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5조 적용범위의 “엘살바도르,”가 표기된 두 곳에서 “엘살바도르,”다음에 “과테말라,”를 삽입한다. 나. 제1.6조 정의의 당사국들의 정의에서 “엘살바도르,” 다음에 “과테말라,”를 삽입한다. 다. (생략) 4.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나. (생략)	

의정서안 및 한-중미 FTA	관계 법령
다. <u>부속서 2-나 관세 철폐에 이 의정서의 부속서 1 한국 양허표와 과테말라 양허표를 제6절: 한국-과테말라로 추가한다.</u> 라. (생략) 5. ~ 24. (생략)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조 관세 철폐 1. (생략) 2. <u>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u> 3. ~ 5. (생략)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u>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u> ③ (생략)

- 따라서, 이 의정서안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의정서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2】 상품양허 세부내용

< 과테말라의 對한국 관세철폐 주요 품목(SAC기준)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단위 : 개)

구 분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기준 관세율, %)
양허 포함	6,677	95.7%	
즉시 철폐(A)	3,927	56.3%	편직물(10), 순면사(5), 타이어(5~15), 기타직물(10), 자동차부품(10) 등
유관세	468	6.7%	편직물(5,10), 순면사(5), 타이어(5~15), 기타직물(10), 자동차부품(10), 기타섬유제품(10~15) 등
무관세	3,454	49.5%	승용차, 화물차, 합성수지, 제트유, 등유, 등
3년 철폐(B)	13	0.2%	타이어튜브(5), 가죽벨트(15), 해바라기씨유(5), 낙화생유(5) 등
5년 철폐(C)	757	10.9%	섬유사(5), 기타정밀화학(5), 면사(5), 자동차부품(5~10), 전선(5), 음향기기(15) 등
7년 철폐(D)	10	0.1%	잉크(10), 기타고무제품(5), 화장품(15), 자전거부품(5~10), 무기류(10) 등
10년 철폐(E)	1,583	22.7%	축전지(5~15), 인쇄종이(10), 탄약(15), 무기류(15), 자동차부품(5~15) 등
12년 철폐(F)	17	0.2%	합성수지제가방(15), 알루미늄구조물(15), 인쇄용지(10), 문구(10) 등
15년 철폐(G)	328	4.7%	의약품(5), 플라스틱제품(5,10), 신발(15) 등
16년 철폐(H)	27	0.4%	노트북(15), 아연도강판(5), 냉방기(15), 소금(15) 등
19년 철폐(I)	20	0.3%	기타종이(15), 아연도강판(15) 등
양허 제외(X)	297	4.3%	플라스틱제품(10~15), 사과주스(15), 시멘트(5~10), 신발(15), 치즈(15) 등
전 체	6,974	100.0%	

< 한국의 對과테말라 관세철폐 주요 품목(HSK2015기준)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단위 : 개)

구 분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기준 관세율, %)	
양허 포함	11,673	95.3%		
즉시 철폐(A)	9,791	80.0%	사탕수수당(3), 커피(볶은 것 8, 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유관세	7,835	64.0%	여성·남성의류(13), 면직물(10), 기타메리야스(10), 완구(8), 면사(8) 등
	무관세	1,956	16.0%	연광, 철스크랩, 알루미늄, 아연광 등
3년 철폐(B)	180	1.5%	티셔츠(13), 의류 벨트(13), 면사(8) 등	
5년 철폐(C)	587	4.8%	바나나(30), 조주정(8), 신발(13) 등	
7년 철폐(D)	168	1.4%	냉동채소(27), 사탕무당(3), 게(20) 등	
10년 철폐(E)	397	3.2%	냉동채소(27), 목재식탁용품(8), 마태차(25) 등	
12년 철폐(F)	438	3.6%	혼합주스(50), 파스타(5), 계피(8) 등	
15년 철폐(G)	89	0.7%	잎담배(20), 포도주(15), 상추(45) 등	
16년 철폐(H)	21	0.2%	토마토(45), 소스(45), 견과류(45) 등	
19년 철폐(I)	2	0.0%	만다린(144), 돼지고기 넓적다리살(25) 등	
양허 제외(X)	554	4.5%	천연꿀(244), 치즈(36), 참깨(630), 참기름(630), 옥수수(630), 냉동소고기(40) 등	
협정 배제(Y)	16	0.1%	쌀(513), 맵쌀(513), 현미(513) 등	
전 체	12,243	100.0%		

【참고자료 3】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영향평가 결과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영향평가 결과 요약 >

실질 GDP (10년 누적)	소비자 후생 (10년 누적)	생산효과(10년 연평균)			고용효과 (10년 누적)	세수증감 (10년평균)
		제조업	농업	수산업		
0.02%	1.9억불	141억원	△3억원	-	828명	484억원

① 총괄

- (거시경제효과) 발효 후 10년에 걸쳐 우리 실질 GDP는 약 0.02%, 소비자후생은 약 1.9억 달러 추가 증가 예상
- (고용창출) 발효 5년 후 849명, 10년 후에는 828명 고용 창출 예상
- (세수효과) 발효 후 세수입 증가는 연평균 약 484.4억원 예상으로, 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526.6억원)와 관세수입 감소(42.2억원) 반영

② 제조업

- (교역창출효과)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600만 달러, 수입은 연평균 40만 달러로 순수출은 연평균 약 560만 달러로 예상
- (생산효과) 제조업(연평균 105억원) 및 서비스업(연평균 36억원)의 생산 증가로 인해 연평균 14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경우 68억원의 생산효과 발생, 전체 효과 중 48.2% 차지

③ 농축산업

- (생산효과) 바나나, 냉동과일 등 수입 증가에 따른 과일생산액 감소로 농업생산량 연평균 3억원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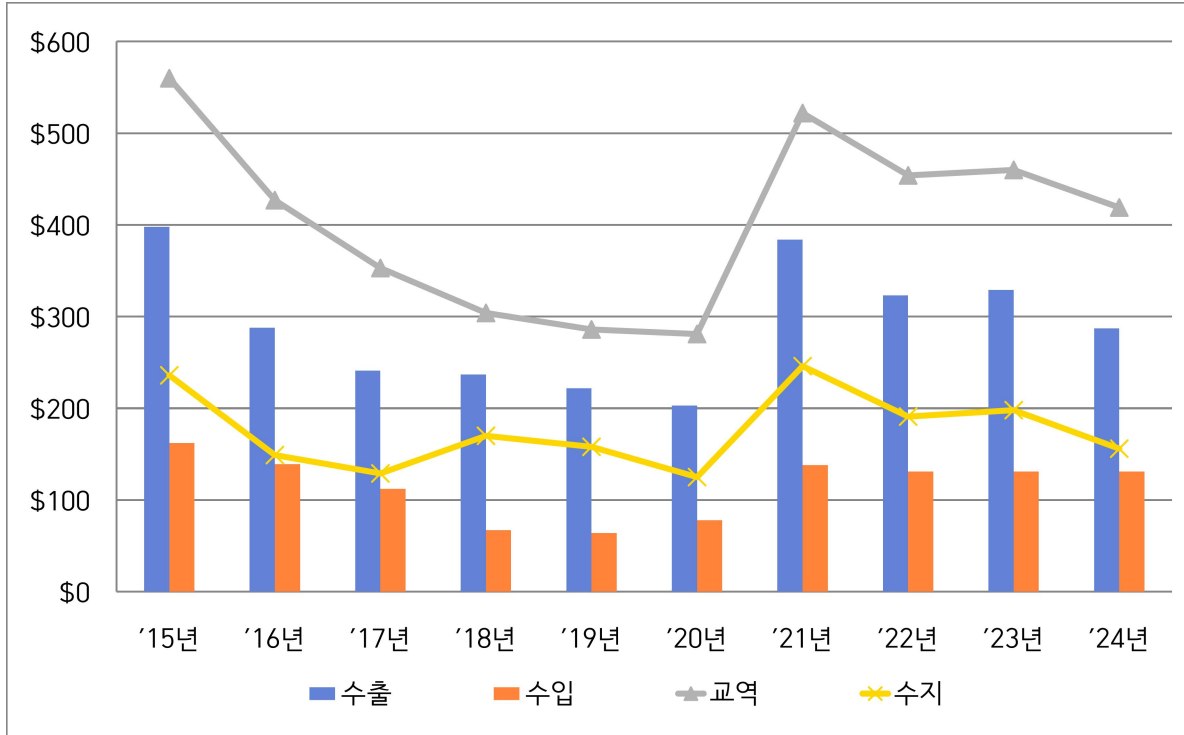
*타 FTA 연평균 농업피해 : (한·이스라엘) 28억원, (한·인니) 3.4억원, (한·캄) 6천만원

④ 수산업

- (생산효과) 대과테말라 수산물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
- (수출효과) 어묵, 굴, 전복 등이 유망 품목으로 수출 증가 기대

【참고자료 4】 한-과테말라 교역 투자 현황

□ 한국의 對과테말라 교역 현황(단위 : 백만불)



※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 교역 현황

< 한-과테말라 연도별 무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수	금액	398	288	241	237	222	203	384	323	329	287
	증가율	24.4	△27.6	△16.3	△1.7	△6.3	△8.6	88.8	△15.9	1.9	△12.6
입	금액	162	139	112	67	64	78	138	131	131	131
	증가율	△49.5	△14.2	△19.4	△40.2	△4.5	21.9	77.2	△5.0	△0.5	0.3
무역규모		560	427	353	304	286	281	522	454	460	418
증가율		△12.6	△23.8	△17.3	△13.9	△5.9	△1.8	85.8	△13	1.3	△9.1
무역수지		236	149	129	170	158	125	246	191	198	156

※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 2024년 한-과테말라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MTI 4단위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화물자동차(7412)	42	△9.2	커피류(0151)	49	△8.9
2	승용차(7411)	40	△3.7	당류(0158)	33	0.3
3	합성수지(2140)	26	△9.5	동괴및스크랩(6221)	13	98.9
4	기타정밀화학제품(2290)	15	△20.4	과실류(0116)	9	△18.4
5	건설중장비(7251)	13	31.9	편직제의류(4411)	8	△5.8
6	염료(2211)	10	△3.1	알루미늄괴및스크랩(6211)	6	20.5
7	의약품(2262)	10	△13.6	기타전기부품(8499)	6	4162.6
8	음료(0159)	8	29.1	연초류(0154)	2	883.3
9	연초류(0154)	8	△24.0	벨트(5213)	1	126.4
10	축전지(8352)	7	73.0	종자류(0170)	1	△6.5
	품목 합계	179		품목 합계	128	
	전체 합계	287		전체 합계	131	

* '24년까지의 누적실적

□ 투자 현황

< 한국의 對과테말라 연도별 투자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계
건 수	4	3	7	1	6	5	15	11	18	46	344
금 액	0	0	14	2	3	2	27	10	19	81	276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85년-'24년 누적값

< 과테말라의 對한국 투자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계
건 수	-	-	-	-	-	-	-	2	-	-	6
금 액	-	-	-	-	-	-	-	0.5	-	-	0.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NSC, '62년-'24년 누적값